

定 款

(公 證 畢)

목 차

제 1 장 총칙	3
제 1조 (상호)	3
제 2조 (목적)	3
제 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4
제 4조 (공고방법)	4
제 2 장 주식	5
제 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5
제 6조 (일주의 금액)	5
제 7조 (주식의 종류)	5
제 7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5
제 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5
제 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5
제 9조의 2 (동등배당)	6
제10조 (명의개서 대리인)	6
제11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7
제12조 (기준일)	7
제 3 장 사채	7
제13조 (사채의 발행)	7
제13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7
제14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및 배정)	8
제14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8
제15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9
제 4 장 주주총회	9
제16조 (소집시기)	9
제17조 (소집권자)	9
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9
제19조 (소집지)	9
제20조 (의장)	9
제21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9
제22조 (주주의 의결권)	10
제23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10

제24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0
제25조 (의결권의 대리 행사)	10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10
제27조 (주주총회의 의사로)	10
제 5 장 이사 · 이사회 · 감사	10
제28조 (이사의 수)	10
제29조 (이사의 선임)	10
제30조 (이사의 임기)	10
제31조 (이사의 보선)	11
제3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11
제33조 (이사의 직무)	11
제33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11
제33조의 3 (이사 ·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강경)	11
제34조 (삭제)	11
제35조 (삭제)	11
제36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11
제37조 (이사회 의장)	11
제38조 (이사회 결의방법)	11
제39조 (이사회 의사록)	12
제39조의 2 (위원회)	12
제39조의 3 (감사위원회의 구성)	12
제39조의 4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13
제39조의 5 (감사록)	13
제40조 (이사의 퇴직금)	13
제41조 (고문의 추대)	13
제 6 장 계산	13
제42조 (사업연도)	13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3
제43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14
제44조 (이익금의 처분)	14
제45조 (이익배당)	14
제45조의 2 (중간배당)	14
제46조 (배당금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15
부칙	15

삼양식품주식회사 정관

1963년 3월 28일	제정	1984년 2월 27일	개정
1965년 3월 29일	개정	1985년 2월 27일	개정
1965년 5월 20일	개정	1986년 2월 27일	개정
1965년 10월 1일	개정	1987년 2월 27일	개정
1965년 11월 1일	개정	1988년 3월 17일	개정
1966년 11월 25일	개정	1989년 3월 16일	개정
1967년 6월 13일	개정	1990년 3월 29일	개정
1968년 2월 14일	개정	1992년 3월 27일	개정
1968년 5월 14일	개정	1993년 3월 19일	개정
1969년 1월 14일	개정	1994년 3월 19일	개정
1969년 2월 14일	개정	1995년 3월 16일	개정
1969년 4월 18일	개정	1996년 3월 16일	개정
1970년 2월 10일	개정	1997년 3월 29일	개정
1972년 2월 14일	개정	1998년 3월 26일	개정
1972년 11월 25일	개정	1999년 3월 27일	개정
1973년 5월 5일	개정	2003년 3월 29일	개정
1973년 8월 20일	개정	2004년 3월 27일	개정
1973년 10월 1일	개정	2005년 3월 24일	개정
1974년 2월 20일	개정	2007년 3월 9일	개정
1974년 4월 30일	개정	2009년 3월 20일	개정
1974년 7월 24일	개정	2010년 3월 18일	개정
1974년 8월 26일	개정	2012년 3월 23일	개정
1975년 6월 10일	개정	2014년 3월 21일	개정
1976년 2월 27일	개정	2018년 3월 23일	개정
1977년 2월 26일	개정	2019년 3월 22일	개정
1978년 2월 27일	개정	2021년 3월 26일	개정
1980년 2월 28일	개정	2023년 3월 29일	개정
1980년 4월 25일	개정	2023년 10월 24일	개정
1981년 2월 26일	개정	2024년 03월 28일	개정
1983년 2월 26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삼양식품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Samyang Foods Inc.로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식품제조판매업
2. 유지업
3. 장유제조판매업(간장, 된장, 고추장)
4. 유가공제조판매업
5. 빙과류제조판매업
6. 무역업
7. 인쇄업
8. 전자제품업
9. 농축산업(방목은 제외)
10. 가공식품의 판매업
11. 사료제조판매업
12. 물품판매 및 수탁제조판매업
13. 물품중개 알선업
14.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오파업)
15. 운수창고업 및 자동차정비업
16. 군관용달납품업
17. 원자재자금 및 종업원복지후생을 위한 농작물 경작
18. 삭제
19. 주차장 운영업
20. 광천음료수 제조판매업
21. 다류제조판매업
22. 삭제
23. 청량음료 제조판매업
24. 의약품 수입판매업
25.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
26. 음식점업 및 기타 서비스 사업
27. 프랜차이즈 모집 및 운영업
28. 도시락 제조 및 판매업
29. 인테리어사업
30. 가구, 주방기기등 판매업
31. 인테리어소품 및 관련제품 판매업
32. 인터넷 포탈 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업
33. 전 각호 일체의 수출입업 및 수출입품 판매업
34. 교육서비스업
35. 부동산 투자, 건설, 임대, 관리, 중개, 개발, 분양 및 판매사업
36. 관광사업
37.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현지법인, 공

장, 지사, 출장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yangfood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천삼백만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7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칠십만주로 한다.

②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 이상 1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7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 8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9 조의 2(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0조(명의개서 대리인)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채

제13조(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는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신주

인수권의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5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0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16조(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주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4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이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주주총회 개최 전에 소정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전항의 대리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권을 설명하는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주주로서의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 사 · 이 사 회 · 감 사 위 원 회

제28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 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

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결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1조(이사의 보선)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법률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각자 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②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 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8조(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9조의2(위원회)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보상위원회
3. 경영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ESG위원회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위원회

제39조의3(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

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의4(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 정관 제3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9조의5(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한도를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고문의 추대)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이사회의 자문에 응답하여 이 회사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42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 및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한다.

제44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퇴직 및 위로금의 적립

6. 임원 상여금의 적립

7.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8. 차기 이월잉여금

제45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중간배당)

①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46조(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익배당금은 지급확정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회사에 귀속된다.

부 칙

제 1 조(사규의 제정)

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규정은 이사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 2 개정 규정은 본 정관 개정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제3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제49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개정 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제5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10조, 11조(삭제), 14조의2 및 15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시행되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제6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10월 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제6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